

9-45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시행세칙

2009.3.1. 제정

2026.7.15. 개정

주무부서 :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발전기금 조성·운영 규정」 제8조에서 정한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4.>

제2조(적용범위) ①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품 기부자 및 약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4.24.>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기부금 성격을 가지거나, 기타 학교 발전을 위한 기여에 대하여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협력처장의 결정으로 이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 예우 할 수 있다. <개정 2025.4.24.>

제3조(예우자) 발전기금 예우는 총장이 한다. <개정 2025.4.24.>

제4조(예우 종류) ① 발전기금 기부를 약정하고, 기부를 실현한 자에 한하여 감사패, 부속병원 예우(건강검진권, 진료비 감면, 장례 예우), 무료 주차권, 생일 예우, 기금명 아호 부여 관리, 명절 예우, 학교 달력 발송, 경조사 예우, 중앙도서관 예우 등으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금액별 예우 종류는 [별표1]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5.12.10., 2025.4.24., 2026.7.15.>

② 제1항외 별도의 예우방법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외협력처장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5억 이상 고액기부자에 대하여 부속병원 건강검진권 외에 별도의 의료예우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중앙대학교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4.24.>

④ 기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기부자별로 맞춤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4.24.>

⑤ 예우는 기부 또는 약정한 본인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부 또는 약정한 단체의 책임자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과 범위는 대외협력처장이 결정한다.

제5조 삭제 <2025.4.24.>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0.>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4.24.>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7.15.>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12.10., 2025.4.24., 2026.7.15.>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표

예우 방법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총장 주관 전달식		-	-	-	●	●	●	●	●	●
감사패		-	●	●	●	●	●	●	●	●
부속병원 건강검진권	본인	-	기본	기본	기본 (2년)	프리미엄 (2년)	프리미엄 (3년)	프리미엄 (3년)	다이아몬드 (3년)	다이아몬드 (5년)
	배우자	-	-	기본	기본 (2년)	프리미엄 (2년)	프리미엄 (3년)	프리미엄 (3년)	다이아몬드 (3년)	다이아몬드 (5년)
진료비감면	본인	-	-	-	-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50% 감면	50% 감면
	배우자	-	-	-	-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50% 감면	50% 감면
장례예우	본인	-	-	-	-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50% 감면	50% 감면
	배우자	-	-	-	-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50% 감면	50% 감면
무료 주차권		-	●	●	●	●	●	●	●	●
생일 예우		-	●	●	●	●	●	●	●	●
기금명 아호 부여 (별도 관리)		-	-	-	-	●	●	●	●	●
공간 명칭 부여		-	-	-	-	-	●	●	●	●
명절 예우		-	-	-	●(5년)	●	●	●	●	●
학교 달력 발송		-	●	●	●	●	●	●	●	●
경조사 예우		-	-	-	●	●	●	●	●	●
중앙도서관 예우		●	●	●	●	●	●	●	●	●

- 1) 모든 예우는 입금된 누적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별 1회 예우한다.
- 2) 무료 주차권은 재직 교직원, 학교 입점 임대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3) 건강검진권은 기부자 본인과 배우자로 기명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발행 금액 범위 내에서 기본 검진과 추가 검진 모두 사용 가능하다.
- 4) 진료비는 30% 감면시 연간 300만원, 50% 감면시 연간 500만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에서 감면하며, 기부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한도를 둔다.
- 5) 장례 예우는 기부자와 배우자 본인 상에 한하여 각각 최대 한도 500만원 이내로 한다.
- 6) 중앙도서관 예우는 「학술정보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의 기준에 따른다.
- 7) 상기 내용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